

◆ 조합원 가입 구비서류 ◆

☞ 공통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 신청서(영농회장 확인필요) - 농협수령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 기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 본인
- 증명사진 1매 - 본인
- 토지 임대차계약서 - 임차농의 경우

☞ 가족조합원 신청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이어야 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
- 가족 조합원 가입기준은 농업경영면적 2,000㎡ 이상 이어야 함.

◆ 조합원 가입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조합원 가입 승낙서를 받고난 후 1개월 내에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하여야만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약 1개월이 지나도 가입 승낙에 대한 연락(우편 및 전화)이 없으면 반드시 농협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고 이로 인하여 영농 자재 및 기타 환원사업의 보조를 조합원 환원사업 시행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가입 전 대출이 있는 경우 비조합원 대출이율에서 조합원 대출 이율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 농협 대부계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원당농협 조합원 관리에 있어 주소는 매우 중요하므로 주소가 변경되면 주민 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주소를 변경하여 주시고, 조합원으로서의 각종 우대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출자금 세금우대 한도 초과 시에는 과세로 전환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조합원신청자 : (인)

조합원 가입 신청서

(자연인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소								휴대폰			
인수예정 출자(가입)금	좌 천원	생년월일 (음, 양)					결혼기념일 (음, 양)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농업종사구분	농업경영주()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자격확인 서류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인삼경작확인서() 기타()										
사업장소재지							임차 기간 (사업장 임차 시)	~			
영농·축산 현황	논			m ²	밭			m ²			
	소			두	돼지			두			
	시설원예			m ²	꿀벌			군			
	채소, 과수, 화훼			m ²	인삼			m ²			
	곤충	()	마리	잠종(2만립)			상자				
	기타			m ² , 두, 수	농업종사일수	1년 중		일			
다른조합에의 가입유무	조합명:			그 조합과의 관계							
<p>본인은 농협법 및 귀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며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고자 하니 가입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가입신청인 (인)</p>											
자격 확인	<p>상기 신청인은()영농회(축산계, 작목반, 리·동) 관내에서 농업(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읍)면 (동)리 영농회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원당농업협동조합장 귀하</p>										
고지사항	<p>< 조합원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첨부) 참조 ></p>										

- 주)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자경증명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인삼경작확인서 등 첨부
 2. 자격확인인 사업장 소재지 영농회장, 축산계장, 작목반장, 농지위원, 리·동장 등에게 받음.
 다만, 농업인 확인서류 및 현지실태조사 결과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

조합원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

설 명 내 용	확인
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input type="checkbox"/>
② 농축협이 자본금이 납입출자액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하여 환급합니다.[농협법 제 32조, 제107조, 제112조]	<input type="checkbox"/>
③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분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을 분할 환급할 수 없습니다. [농협법 제31조, 제107조, 제112조, 정관 제13조]	<input type="checkbox"/>
④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출자금 환급은 농축협의 당해연도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승인일(익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협법 제31조, 제107조, 제112조, 정관 제13조]	<input type="checkbox"/>
⑤ 배당금은 매회계연도 결산총회 후 농축협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결정되며, 회계연도 중 탈퇴시 이용고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148조제1항, (품목농축협 정관 제146조제1항)]	<input type="checkbox"/>
⑥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농협법 제21조, 제107조, 제112조, 정관 제13조]	<input type="checkbox"/>
⑦ 주소, 전화번호 등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조합원 자격 변경, 상실 시에는 즉시 농축협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⑧ 사업미이용 및 의무불이행 등의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 될 수 있습니다. [농협법 제30조, 제107조, 제112조, 정관 제12조]	<input type="checkbox"/>
⑨ 조합원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조의2, 제88조의5]	<input type="checkbox"/>
<p>위 설명내용을 잘 들었고, 농축협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농축협이 자본잠식 될 경우에는 (감액된 출자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청구는 (탈퇴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 승인일)부터 청구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인, 서명)</p>	

담 당 직 원 확 인

원당농업협동조합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인, 서명)

※ 원본은 농축협 보관, 사본은 가입신청자에게 교부